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채익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7848

발의연월일: 2022. 10. 18.

발 의 자:이채익・홍문표・김석기

황보승희 • 윤상현 • 윤영석

이달곤 · 최영희 · 김영선

김미애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미납지방세 열람제도를 두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차하려는 건물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납지방세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임대인과의 관계에 있어 약자의 지위에 있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기 어렵고, 임대차계약 전까지만 열람을 신청할 수 있어 계약일 이후부터 확정일자 전까지 발생하는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확인할 수 없으며, 건물 소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만 열람을 신청할 수 있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음.

이에 임차하려는 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미납지방세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, 임차인이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차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열람신청을

할 수 있도록 하며,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열람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미납지방세 열람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6 조).

법률 제 호

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 전단 중 "자"를 "자(이하 이 조에서 "임차인"이라 한다)"로, "전에"를 "전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"로, "임차할 건물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"을 "지방자치단체의 장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"체납액,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후 납기가 되지 아니한 지방세"를 "체납액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중 "제1항에"를 "제1항 및 제3항에"로 한다.

- 2.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후 납기가 되지 아니한 지방세
-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1항에 따른 열람신청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열람신청을 접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열람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미납지방세 등의 열람에 관한 적용례)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열람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미납지방세 등의 열람) ①	제6조(미납지방세 등의 열람) ①
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 제2조에	
따른 주거용 건물 또는 「상가	
건물 임대차보호법」 제2조에	
따른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	
용하려는 <u>자</u> 는 건물에 대한 임	<u>자(이하 이 조에서</u>
대차계약을 하기 <u>전에</u> 임대인	<u> "임차인"이라 한다)전 또는</u>
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이 납부	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
하지 아니한 지방세의 열람을	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
임차할 건물 소재지의 지방자	<u>지방자</u>
<u>치단체의 장</u> 에게 신청할 수 있	<u> 치단체의 장</u>
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	
은 열람신청에 응하여야 한다.	
② 제1항에 따라 임차인이 열	2
람할 수 있는 지방세는 다음	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	
지방세로 한정한다.	
1. 임대인의 <u>체납액, 납세고지</u>	1 <u>체납액</u>
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발급	
한 후 납기가 되지 아니한	
<u>지방세</u>	
<u><신 설></u>	2.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
	를 발급한 후 납기가 되지 아

<u>2.</u> (생 략) <u><신 설></u>

③ <u>제1항에</u> 따른 열람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니한 지방세

- 3. (현행 제2호와 같음)
-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1항에 따른 열람신청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열람신청을 접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열람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④ 제1항 및 제3항에-----

-----.